

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제·개정 이유

리스크관리협의회 외부위원 수 확대를 통해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함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리스크관리협의회 외부위원의 수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5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2년 11월 02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○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부산국제금융센터 17층
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실

○ 담당자(이메일) : 박휘성 선임주임(phstar298@khug.or.kr)

○ 전화번호 : 051-955-5871

○ 팩스번호 : 051-998-2250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공사 경영목표인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사규 개정 필요

※ 별첨 :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15조(리스크관리협회의의 구성) ① 리스크관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경영전략본부장 및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, 기획조정실장, 재무관리처장, 경영지원처장, 금융기획실장, 개인보증처장, 금융심사처장, 채권관리실장, 보증이행처장, 기금관리실장, 감사실장 및 외부위원 <u>2인 이내</u>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시에는 경영전략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장 또는 팀장을 추가할 수 있다. ②~⑥ (생 략)	제15조(리스크관리협회의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인 이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②~⑥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	리스크관리협의회 외부위원수 확대